자동차 빌리기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찾기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5년 11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정보는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s://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정보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변조하거나 생활법령정보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빌리기]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할 예정이신가요?
이 콘텐츠에서는 자동차 대여예약, 계약체결, 이용 중 준수사항, 교통사고 발생 시 처리방법, 자동차 반납 시 문제 해결 방법 등에 대한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자동차 빌리기 1
1. 자동차 대여받기 4
1.1. 자동차 대여방법 및 운전 자격 4
1.1.1. 자동차 대여방법 4
1.1.2. 자동차 운전 자격 5
1.2. 자동차 대여계약 및 보험가입 등 8
1.2.1. 자동차 대여계약 등 8
1.2.2. 보험가입 등 10
1.3. 자동차 인수 12
1.3.1. 자동차 인수 시 확인사항 12
2. 자동차 이용하기 15
2.1. 대여기간 중 계약의 변동 15
2.1.1. 대여계약의 변경 및 해지 15
2.2. 대여기간 중 이용방법 16
2.2.1. 준수사항 및 자동차 관리 책임 17
2.2.2. 대여고객의 금지사항 20
2.3. 대여기간 중 교통사고 처리방법 22
2.3.1. 사고 조치 및 보험처리 22
2.3.2. 영업손해 배상 등 25
3. 자동차 반납하기 27
3.1. 자동차 반납방법 27
3.1.1. 반납 시기 및 장소 등 27
3.2. 자동차 반납 시 문제 해결방법 28
3.2.1. 지연반납 및 미반납 시 조치 28

1. 자동차 대여받기

1.1. 자동차 대여방법 및 운전 자격

1.1.1. 자동차 대여방법

자동차 대여

"자동차 대여"란?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캠핑용자동차를 말하며, 자동차대여사업에 한정)를 말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

"자동차 대여"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貸與)하는 것을 말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 참조).

자동차 대여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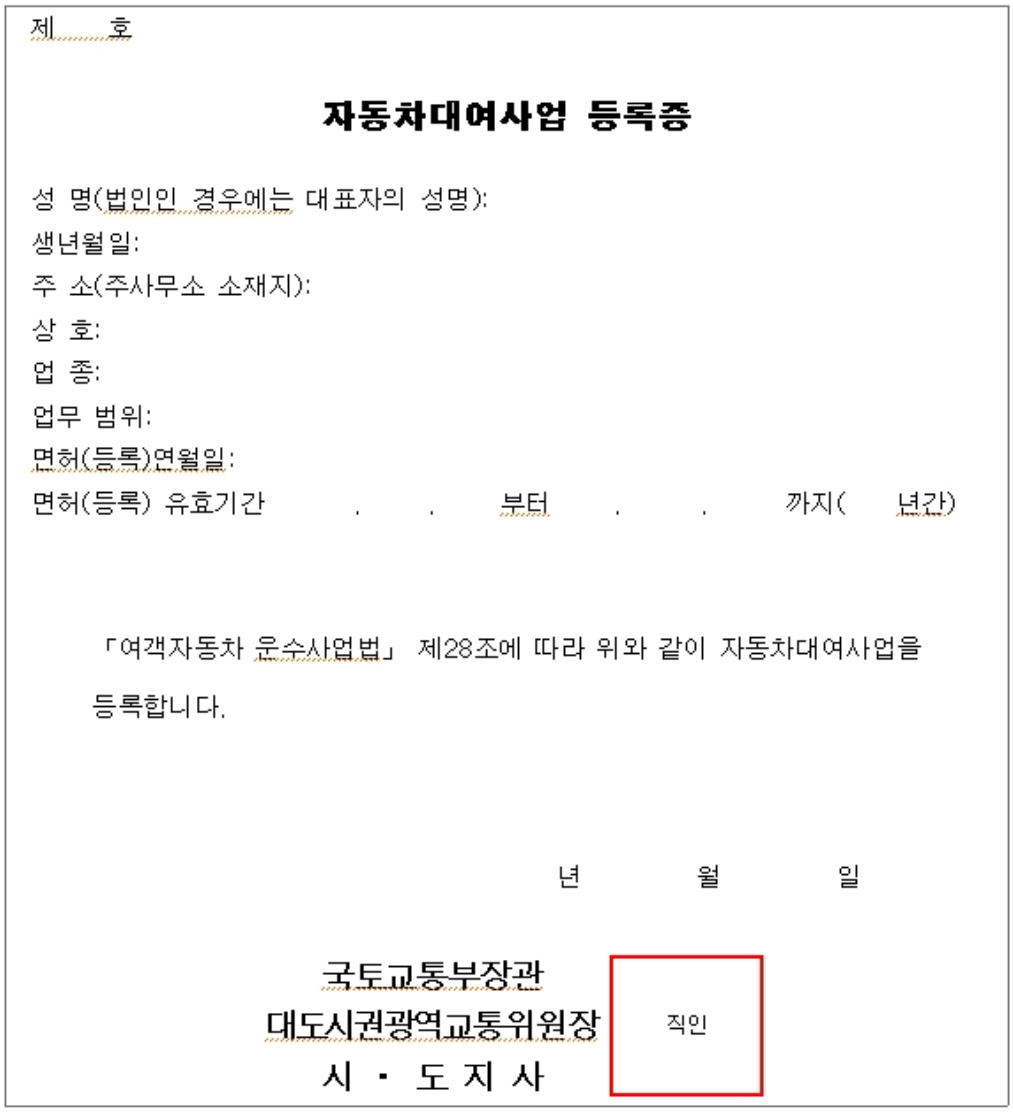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개념이 보편화되면서 자동차 대여의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렌트, 카셰어링, 장기렌트, 리스 등의 방법으로 자동차 대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동차대여사업자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여부 확인

자동차대여업체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등 관할관청에서 그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을 발급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62조제1항 참조).

자동차를 대여하려는 사람은 해당 업체가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되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인지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을 확인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

성 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 소(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업 종:
업무 범위:
면허(등록)연월일:
면허(등록) 유효기간 . . 부터 . . 까지(년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시 · 도 지 사

직인

1.1.2. 자동차 운전 자격

자동차 운전 자격 확인

운전 자격 확인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대여할 때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에 대해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이용하여 운전 자격을 확인하고, 해당 운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대여해서는 안 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의2제2항 본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대여하는 자동차가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보유한 운전면허의 범위(「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범위를 말함)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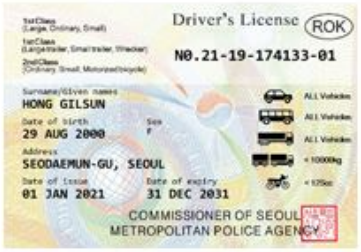
다만,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임차인이 법인 또는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른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개인사업자인 경우로서 임대차계약서에 운전자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운전 자격 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의2제2항 단서).

※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운전자격확인시스템(https://rims.kotsa.or.kr)을 통해 대여정보와 면허정보 등을 입력하여 운전자격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확인

운전면허 종류 및 운전 가능 차량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제1항 본문).

구 분	영문운전면허증(국문겸용)		국문운전면허증	
면허증	앞면 (국문)		앞면 (국문)	
	뒷면 (영문)		뒷면	
차이점	번역공증, 국제면허증 없이도 외국(63개국)에서 운전 가능 ※ 별도의 국문면허증 불필요		번역공증 또는 국제운전면허증 지참 시 외국에서 운전 가능	

<출처: 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증 발급 안내>

자동차를 대여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차량 종류에 따른 운전면허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7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18 참조).

대여 가능 차량				운전면허
승용자동차	경형	초소형	배기량이 250cc(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출력이 15킬로와트) 이하이고, 길이 3.6m·너비 1.5m·높이 2.0m 이하인 것	• 제1종 대형면허 • 제1종 보통면허 • 제2종 보통면허
		일반형	배기량이 1,000cc(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출력이 80킬로와트)미만이고,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인 것	
	소형		배기량이 1,600cc 미만이고, 길이 4.7m·너비 1.7m·높이 2.0m 이하인 것	
	중형		배기량이 1,600cc 이상 2,000cc 미만이거나, 길이·너비·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것	
	대형		배기량이 2,000cc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는 것	
승합자동차	경형		배기량이 1,000cc(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출력이 80킬로와트) 미만이고,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인 것	• 제1종 대형면허 • 제1종 보통면허(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제2종 보통면허(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소형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이고, 길이 4.7m·너비 1.7m·높이 2.0m 이하인 것	
	중형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이고, 길이·너비·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고, 길이가 9m 미만인 것	
특수자동차	경형		배기량이 1,000cc(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출력이 80킬로와트) 미만이고, 길이 3.6m·너비1.6m·높이 2.0m 이하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른 캠핑용자동차	• 제1종 대형면허 • 제1종 보통면허(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 • 제2종 보통면허(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
	소형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른 캠핑용자동차	• 제1종 대형면허 • 제1종 보통면허(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 • 제2종 보통면허(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

운전면허 유효기간

누구든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43조).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7조제1항).

최초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기산하여 10년(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최초의 운전면허증 외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부터 기산하여 매 10년(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43조).

이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1.2. 자동차 대여계약 및 보험가입 등

1.2.1. 자동차 대여계약 등

※ 아래에서는 「자동차대여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제10064호, 2021. 10. 29. 개정·시행)을 중심으로 자동차 대여계약에 대해 살펴봅니다. 계약내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우선하며, 각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거래에 이용할 약관을 자유롭게 작성·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준약관은 권고사항(가이드라인)으로 각 자동차대여사업자의 개별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을 경우 참조할 수 있으며, 구속력이 없습니다.

※ 자동차 대여 및 환불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자동차대여사업자의 개별 약관에 따르되,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해당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28호, 2023. 12. 20. 발령·시행) 별표 2 제46호 자동차대여업 부분에 따릅니다.

자동차 대여예약 및 취소

자동차 대여예약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람(이하 "고객"이라 함)은 미리 차종, 대여요금, 지연손해금, 임차예정일시, 임차장소, 임차기간, 반환장소, 운전자 및 그 밖의 임차조건 등을 확인하여 예약을 할 수 있으며, 대여사업자는 대여예정요금의 10% 범위에서 예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2조제1항).

자동차대여 전 예약취소

임차예정 시간을 1시간 이상 지나서도 대여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보고 이 경우 예약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3조제1항).

고객이 자신의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할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예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46호 및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3조제2항·제3항).

분쟁유형	해결기준
사용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 시	예약금 전액 환급
사용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 통보 시	예약금 중 대여예정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다만, 취소시점은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며, 관련된 증빙자료 등을 남겨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출처: 한국소비자원-품목별 피해구제 사례-『렌터카 계약취소 시 계약금 환급 요구』).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예약금을 수령한 후 회사의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하거나 대여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고객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예약금에 대여예정 요금의 10%를 가산하여 환급해야 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46호 및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3조제4항).

자동차대여 예약을 한 후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고객에게 예약금을 반환해야 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3조제5항).

자동차 대여계약 체결 및 요금납부

대여계약 체결

대여계약의 체결은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며, 임대차계약서에는 예약의 체결에서 열거한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4조제1항).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고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여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받은 예약금을 반환해야 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4조제2항 본문).

· 고객(고객이 아닌 자가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인 경우 운전자를 말함)이 운전에 필요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거나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운전자격 확인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다만,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사고발생의 빈도 및 보험적용요율 등을 고려하여 고객의 연령 및 운전경력 등을 특약으로 정할 수 있음)

신원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질문 및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고객이 음주상태에 있거나, 마약, 각성제, 신나 등 약물에 중독되었다고 판단될 때

예약 당시 결정한 운전자와 자동차 인수 시 운전자가 다를 때

과거 자동차 대여와 관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 또는 대여요금, 면책금, 수리비 등의 체납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

과거 자동차 대여와 관련하여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5조에 해당하는 금지행위가 있었을 때

위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대여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을 때

※ (Q&A) 청각장애인에 대한 차량 대여 거부 차별 사례

Q. 제가 청각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장애로 인해 계약 과정의 녹취가 불가능하고, 차량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차량 리스업체로부터 차량 대여를 거부당했어요. 이건 장애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아닌가요?

A.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서면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하도록 명시한 점, ② 자동차보험 운영사가 자동차 보험 계약에 따른 사고 신고 접수 및 출동 서비스 등을 제공하면서 음성언어 사용자가 아닌 사람들을 위하여 문자, 수어 통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점, ③ 진정인이 대여 문의 및 상담을 피진정인과 문자로 여러 차례 나누는 과정에서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된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사례에서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 대여를 거부한 것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를 위반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출처: 『청각장애인에 대한 차량 대여 거부는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20024. 9. 2. 보도자료) 2면 참조>

요금납부 방법

고객은 원칙적으로 약정한 대여요금을 선납해야 하지만, 자동차대여사업자와 고객은 대여요금을 분납하거나 사용 후에 지급하기로 별도의 약정을 할 수 있습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6조제1항).

고객의 요구로 대여요금 외의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객은 그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6조제2항).

고객은 임차기간을 초과하여 차량을 사용한 경우에는 차량 반환 시 추가로 대여요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6조제3항).

1.2.2. 보험가입 등

※ 아래에서는 「자동차대여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제10064호, 2021. 10. 29. 개정·시행)을 중심으로 자동차 대여계약에 대해 살펴봅니다. 계약내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우선하며, 각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거래에 이용할 약관을 자유롭게 작성·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준약관은 권고사항(가이드라인)으로 각 자동차대여사업자의 개별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을 경우 참조할 수 있으며, 구속력이 없습니다.

보험가입

보험가입 선택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람(이하 "고객"이라 함)에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책임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에 가입된 차량을 대여하며, 이 경우 고객은 자동차보험약관상 승낙피보험자가 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1조제1항).

고객은 차량사고 발생 시 손해를 줄이기 위해 다음의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1조제2항).

자기차량손해에 대한 보험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는 차량손해면책제도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계약체결시 고객에게 보험가입 및 보장금액에 대한 사항을 설명해야 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1조제3항).

※ 보험가입 관련 동의 및 설명 의제조항 관련 불공정한 약관 사례

시정 전	시정 후
00렌터카 이용약관 제20조 보험가입 등 ③ 회사는 예약 체결 시 회원에게 보험가입 및 보장금액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단, 플랫폼 또는 렌터카 고객센터를 통해 예약을 체결할 경우, 회원은 회원가입 또는 예약 과정에서 보험가입 및 보장금액에 관한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회사는 이에 관한 설명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합니다.	00렌터카 이용약관 제20조 보험가입 등 ③ 삭제

▶ (시정 전) 00렌터카는 고객이 플랫폼 또는 00렌터카 고객센터를 통해 예약하면 보험가입 및 보장금액에 관한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하고 는 이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는 약관 조항을 두고 있었습니다.

→ 렌터카 차량에 가입된 자동차보험 등에 대해 실제로는 충분히 설명하였더라도, 이러한 약관조항 자체는 일정한 작위가 있을 경우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보는 조항 및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으로 「약관규제법」 제12조에 따라 무효가 됩니다.

▶ (시정 후) 이에 00렌터카는 해당 약관조항을 스스로 삭제해 위법성을 해소했습니다.

<출처: 『00렌터카의 사고 미신고 관련 조항 등 불공정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 2022. 9. 13. 보도자료) 3면 참조>

차량손해면책제도

"차량손해면책제도"란?

"차량손해면책제도"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자기 차량 손해에 대한 보전 차원에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마련·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자차 사고 시 수리비 등은 원칙적으로 고객이 부담해야 하나 차량 손해 면책 제도에 가입한 사람은 일정한 면책금만 납부하면 해당 차량에 대한 손해를 면책받게 되는 제도를 말합니다[『카셰어링 서비스,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 대폭 시정』, (공정거래위원회 2017. 7. 3. 보도자료) 6면 참조].

차량손해면책제도 관련 불공정한 약관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조건 차량손해면책제도에 자동으로 가입되는 약관은 불공정약관에 해당합니다[『카셰어링 서비스,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 대폭 시정』, (공정거래위원회 2017. 7. 3. 보도자료) 6면 참조].

예시	"회원은 차량 사고 발생 시 회사가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는 차량 손해 면책 제도에 가입됩니다"

※ 차량손해면책제도 사고 미신고에 대한 불공정한 약관 사례

시정 전	시정 후
00렌터카 차량손해면책제도 이용약관 제4조 보장 범위 및 처리 ④ 제5조 금지 조항에 따른 행위를 통해 손해 발생 시 보장이 불가하며, 손해배상금 및 페널티 금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5조 금지조항 ④ 차량의 사고, 파손 사실을 즉시 또는 해당 예약 기간 중 알리지 않았거나, 고의로 은폐, 도주, 현장 이탈한 경우	00렌터카 차량손해면책제도 이용약관 제4조 보장 범위 및 처리 ④ 제5조 금지 조항에 따른 행위를 통해 손해 발생 시 보장이 불가하며, 손해배상금 및 페널티 금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5조 금지조항 ④ 정당한 이유 없이 차량의 사고, 파손 사실을 즉시 또는 해당 예약 기간 중 알리지 않았거나, 고의로 은폐, 도주, 현장 이탈한 경우

▶ (시정 전) 00렌터카의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 중 사고 또는 파손이 발생하였음에도 고객이 렌터카에 알리지 않은 경우, 미신고 사유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차량손해면책제도 적용이 배제되고 고객에게 페널티 요금이 부과되었습니다.

→ 차량을 대여한 임차인은 차량 대여 기간 중 차량이 파손되거나 차량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에게 해당 파손 또는 사고 사실을 알려서 차량 소유자인 임대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렌터카가 사고 또는 파손 미신고 행위를 제재하는 것 자체는 합리적 목적이 있으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46조제2항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 의무를 제한하는 것과 비교할 때, 사고 및 파손 미신고 사유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제재대상으로 규율하는 것은 불공정 약관에 해당합니다.

▶ (시정 후) 00렌터카는 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과 같이 "정당한 이유 없이" 차량의 사고나 파손 사실을 즉시 또는 해당 예약 기간 중 알리지 않은 경우에 차량손해면책제도 적용이 배제되는 내용으로 스스로 시정했습니다.

<출처: 『00렌터카의 사고 미신고 관련 조항 등 불공정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 2022. 9. 13. 보도자료) 2-3면 참조>

※ 자동차 수리 등에 따른 휴차손해에 대한 내용은 이 콘텐츠 <자동차 이용하기-대여기간 중 교통사고 처리방법-영업손해 배상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 자동차 인수

1.3.1. 자동차 인수 시 확인사항

※ 아래에서는 「자동차대여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제10064호, 2021. 10. 29. 개정·시행)을 중심으로 자동차 대여계약에 대해 살펴봅니다. 계약내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우선하며, 각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거래에 이용할 약관을 자유롭게 작성·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준약관은 권고사항(가이드라인)으로 각 자동차대여사업자의 개별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을 경우 참조할 수 있으며, 구속력이 없습니다.

※ 자동차 대여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자동차대여사업자의 개별 약관에 따르되,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해당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28호, 2023. 12. 20. 발령·시행) 별표 2 제46호 자동차대여업 부분에 따릅니다.

인수 당일 자동차의 대체

대체차량 제공 가능한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람(이하 "고객"이라 함)이 예약한 차종의 차량을 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사한 다른 차종의 차량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5조제1항).

대체 차량의 대여요금이 예약했던 차종의 대여요금보다 비싼 경우에는 예약차종의 대여요금을, 예약차종의 대여요금보다 싼 경우에는 대체 차량의 대여요금을 적용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5조제2항).

고객은 대체 차량의 임차를 거절할 수 있고, 이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고객에게 예약금 전액을 반환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46호 및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5조제3항).

대체차량 제공 불가능한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동급의 대체차량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이미 지급한 대여요금 전액 및 총 대여예정요금의 10%를 가산한 후 환급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별표2 제46호).

인수 전 자동차 상태 점검

인수 전 차량 점검표 작성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고객과 함께 다음의 점검표에 따라 일상점검과 차체외관, 기본공구의 적재, 연료(전기와 수소를 포함)량, 타이어, 와이퍼, 라이트, 사이드미러, 윈도우, 안전벨트 등을 점검한 후 차량을 인도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2조제1항 및 별표).

점검항목	점검대상	점검기준	점검결과
차체외관	차체외관	손상이나 마모 등	차체외관을 그림의 형태로 제공하여 손상여부 체크*
기본 공구의 적재	안전 표지판 (삼각대)	안전 표지판 (삼각대)의 유무	□유 □무
연료량	연료게이지	연료량(리터)	연료게이지를 나타내는 그림의 형태로 제공하여 눈금으로 표기하도록 함
타이어	좌전방타이어 좌후방타이어 우전방타이어 우후방타이어	트레드 깊이 5mm 초과시 양호로 판단	□양호 □불량 □양호 □불량 □양호 □불량 □양호 □불량
와이퍼 (창닦이기 장치)	운전석 와이퍼 조수석 와이퍼 후방 와이퍼	정상 작동 여부	□양호 □불량 □양호 □불량 □양호 □불량 □없음
등화 (라이트)	전조등 후퇴등 후미등 제동등 방향지시등 비상점멸표시등	정상 작동 여부	□양호 □불량 □양호 □불량 □양호 □불량 □양호 □불량 □양호 □불량 □양호 □불량
사이드 미러 (실외 후사경)	운전석 사이드미러 조수석 사이드미러	정상 작동 여부	□양호 □불량 □양호 □불량
윈도우 (창유리)	전방 운전석윈도우 전방 조수석윈도우 후방 좌측 윈도우 후방 우측 윈도우	정상 작동 여부	□양호 □불량 □양호 □불량 □양호 □불량 □양호 □불량
안전벨트 (좌석 안전띠)	전방 운전석 전방 조수석 후방 좌측 좌석 후방 우측 좌석	버클 정상 작동 여부	□양호 □불량 □양호 □불량 □양호 □불량 □양호 □불량

*흠집이나 문제가 있을 시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차량 인도 전 점검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일상적으로 실시하는 점검 시 차량의 정비불량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수리 또는 부품교환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을 기록·유지해야 하며, 고객이 요청할 경우 그 조치의 시기와 내용을 고객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2조제2항).

2. 자동차 이용하기

2.1. 대여기간 중 계약의 변동

2.1.1. 대여계약의 변경 및 해지

※ 아래에서는 「자동차대여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제10064호, 2021. 10. 29. 개정·시행)을 중심으로 자동차 대여계약에 대해 살펴봅니다. 계약내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우선하며, 각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거래에 이용할 약관을 자유롭게 작성·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준약관은 권고사항(가이드라인)으로 각 자동차대여사업자의 개별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을 경우 참조할 수 있으며, 구속력이 없습니다.

※ 자동차 대여 및 환불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자동차대여사업자의 개별 약관에 따르되,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해당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28호, 2023. 12. 20. 발령·시행) 별표 2 제46호 자동차대여업 부분에 따릅니다.

자동차 대여계약 변경

임차조건의 변경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람(이하 "고객"이라 함)이 대여계약의 체결 후 임차조건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0조제1항).

고객이 임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후의 임차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0조제2항).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변경된 임차조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변경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0조제3항).

자동차 대여계약 해지

고객의 대여계약 해지

고객은 차량을 인도 받기 전의 하자로 차량을 사용할 수 없는 때에는 대체 차량의 제공 등의 조치를 받거나 대여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수령한 대여요금 전액을 고객에게 반납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8조제1항 및 제2항).

고객은 임차기간 중이라도 자동차대여사업자와 합의하여 대여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8조제3항).

고객의 사정으로 대여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고객은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 상당액을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46호 및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8조제4항 본문).

다만, 6개월 이상 장기계약의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와 고객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손실을 고려해 중도해지시의 수수료를 별도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8조제4항 단서).

고객의 귀책사유로 차량의 사고 또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 고객은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8조제5항).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대여계약 해지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7조제1항).

고객이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할 때

계약 당시 고객의 개인정보가 허위로 판명된 때

대여요금을 분할납부하기로 한 경우로서 대여기간 중 차임연체액이 2기의 대여요금에 달한 때

고객(고객이 아닌 자가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인 경우에는 운전자)의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때

고객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때

차량 대여 후 고객이 음주운전을 한 때

차량 대여 후 고객이 마약, 각성제, 신나 등 약물에 취한 채 운전한 때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사람이 운전을 한 때(고객이 임차 후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주취,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하여 「소득세법」 제173조제1항에 따른 대리운전 용역제공자에게 운전을 대리하게 한 경우는 제외)

고객이 임차기간 중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5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때

계약이 해지된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를 공제한 후 고객이 실제 납부한 대여요금을 고객에게 지급해야 하고, 고객은 차량을 반환해야 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46호 및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7조제2항).

그 밖의 불가항력 사유에 따른 대여계약 해지

임차기간 중 천재지변, 전쟁,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그 밖에 불가항력 사유(이하 "천재지변 등"이라 함)로 고객이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대여계약은 종료되며, 고객은 이와 같은 사실을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9조제1항).

천재지변 등에 따라 대여계약이 종료된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수령한 대여요금에서 대여계약이 종료된 때까지의 대여요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고객에게 반환해야 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46호 및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9조제2항).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고객이 천재지변 등에 따른 사유로 자동차를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이에 따라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객은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연락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요청에 협조해야 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9조제3항).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할 수 없거나 대체차량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고객은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이에 따라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9조제4항).

2.2. 대여기간 중 이용방법

2.2.1. 준수사항 및 자동차 관리 책임

자동차 사용 시 준수사항

운전면허증 휴대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람(이하 "고객"이라 함)은 자동차를 운전할 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전면허증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92조제1항).

운전면허증(모바일운전면허증 포함),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이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이하 "운전면허증 등"이라 함)

운전면허증 등을 갈음하는 증명서

√ 임시운전증명서

√ 범칙금 납부통고서 또는 출석지시서

√ 출석고지서

※ (Q&A) 모바일 운전면허증

Q. 열마 전, 실물 면허증을 잃어버렸어요. 여행 기간 중 렌트를 하려고 하는데,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있어도 될까요?

A.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전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등록한 경우에는 실물 운전면허증 대신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고, 차량을 렌트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 운전자격 확인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모바일 신분증 홈페이지-새소식-자료실>

이 경우 누구든지 다른 사람 명의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 명의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도로교통법」 제150조제3호의3),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3자 운전 방지의무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임대차계약서에 운전자로 열거되지 않은 사람이 임차한 자동차를 운전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4조의5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에 운전자로 열거되지 않은 사람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4조의5 단서).

임차한 자가 법인 또는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개인사업자인 경우로서 임대차계약서에 운전자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 임차인이 임차 후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주취,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하여 「소득세법」 제173조제1항에 따라 대리운전 용역제공자에게 용역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가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제2항제2호)

그 밖에 임대차계약서에 지정하지 않은 운전자의 운전이 불가피한 경우

※ 아래에서는 「자동차대여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제10064호, 2021. 10. 29. 개정·시행)을 중심으로 자동차 대여계약에 대해 살펴봅니다. 계약내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우선하며, 각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거래에 이용할 약관을 자유롭게 작성·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준약관은 권고사항(가이드라인)으로 각 자동차대여사업자의 개별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을 경우 참조할 수 있으며, 구속력이 없습니다.

자동차 점검의무

고객은 임차기간 중 차량을 사용하기 전에 타이어나 차체의 외관상태 및 시동 후 엔진상태 등을 점검해야 하고, 점검결과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3조제1항 및 제2항).

고객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자동차종합검사 또는 자동차 결함 시정조치(리콜) 이행을 위한 협조요청에 적극 따라야 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3조제3항).

※ 자동차 운전 시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의 『교통·운전』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수 후 자동차 관리 책임

관리자의 주의의무

고객은 차량을 인도받은 시점부터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반환하는 시점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 차량을 사용하고 보관해야 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4조).

자동차 이상 또는 고장 발견 시 조치

고객은 임차 중 차량의 이상 또는 고장을 발견한 때에는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연락하고 그 처리방향에 대해 협의해야 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20조제1항).

고객의 고의·과실로 차량의 이상이나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차량의 인수 및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객이 부담해야 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20조제2항).

차량을 인도받기 이전의 하자로 차량을 사용 불가능하게 되거나 수리가 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고객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대체 차량의 제공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20조제3항).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위의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대여요금을 반환하고, 차량 회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20조제4항).

※ (Q&A) 대여차량의 고장

Q. 승합차를 렌트하여 2박 3일로 친구들과 여행을 갔었는데, 가는 도중 기어작동이 되지 않으면서 차량이 전혀 움직이지 않아 차량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여행을 망쳐버렸습니다. 이 경우 보상받을 방법은 없나요?

A. 대체 차량 제공과 대여요금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에 임차인은 차량 대여 전의 하자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대체 차량의 제공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급의 대체차량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기 지급한 대여요금 전액 및 총 대여예정 요금 10% 가산 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이상 또는 고장이 발생할 경우에는 차량의 인수 및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품목별 피해구제 사례-『대여기간 중 차량하자로 운행을 할 수 없는 경우』 참조>

2.2.2. 대여고객의 금지사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금지행위

유상운송 사용 및 알선 등 금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有償)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해서는 안 되며, 이를 알선(斡旋)해서도 안 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제1항).

이를 위반하여 임차한 자동차를 유상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한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제6호의2).

운전자 알선 금지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해서는 안 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제2항).

이를 위반하여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제6호의3).

여객운송 및 알선 등 금지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알선해서도 안 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제3항).

이를 위반하여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제7호).

명의대여 금지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는 안 되고, 대여를 알선해서도 안 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의4).

이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린 자 또는 대여를 알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1조제6호).

※ 아래에서는 「자동차대여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제10064호, 2021. 10. 29. 개정·시행)을 중심으로 자동차 대여계약에 대해 살펴봅니다. 계약내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우선하며, 각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거래에 이용할 약관을 자유롭게 작성·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준약관은 권고사항(가이드라인)으로 각 자동차대여사업자의 개별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을 경우 참조할 수 있으며, 구속력이 없습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른 금지행위

금지행위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람(이하 "고객"이라 함)은 임차기간 중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5조).

차량을 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차량의 매각, 전대 또는 담보제공 등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

차량의 차량번호판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대여차량을 개조하는 등 그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자동차대여사업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차량을 운전연습 및 각종 시험·경기에 사용하거나 다른 차를 견인하거나 견인에 준하는 행위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위반하여 사용하는 행위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자(고객이 임차 후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주취,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해 「소득세법」 제173조제1항에 따른 대리운전 용역제공자에게 운전을 대리하게 한 경우 그 대리운전 용역제공자는 제외) 또는 무면허자에게 운전을 시키는 행위

음주운전을 하거나 마약, 각성제, 신나 등 약물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행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유사석유제품을 차량의 연료로 사용하는 행위

위에 준하는 행위로 객관적으로 보아 그로 인해 차량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배상책임

고객이 임차기간 중 위의 금지행위, 그 밖에 고객의 책임있는 사유로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제16조제1항).

※ (Q&A) 렌터카 이용 중 속도위반 과태료 납부

Q. 렌터카 이용 시 속도위반을 한 경우 과태료는 누가 내야 하나요?

A. 고객이 임차기간 중 주정차 위반과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인해 부과받은 과태료와 범칙금 및 주차료 등은

차량 반환 후에도 고객이 부담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제16조제2항).

따라서 렌터카 이용 중 속도위반을 한 경우 과태료는 렌터카 계약상의 운전자에게 청구되며, 지자체에서는 렌터카 업체를 통해 운전자를 확인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2.3. 대여기간 중 교통사고 처리방법

2.3.1. 사고 조치 및 보험처리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

피해자 구호조치

차량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함)한 경우에는 그 차량의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인적 사항 제공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인적 사항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제외)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

사고발생 신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차량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에 다음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2항 본문).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그 밖의 조치사항 등

다만, 차량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2항 단서).

※ 아래에서는 「자동차대여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제10064호, 2021. 10. 29. 개정·시행)을 중심으로 교통사고 처리 및 손해배상 등에 대해 살펴봅니다. 계약내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우선하며, 각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거래에 이용할 약관을 자유롭게 작성·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준약관은 권고사항(가이드라인)으로 각 자동차대여사업자의 개별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을 경우 참조할 수 있으며, 구속력이 없습니다.

사고처리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람(이하 "고객"이라 함)은 차량 임차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부상자 후송 및 경찰서 신고 등 「도로교통법」상의 조치를 취하고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7조제1항).

사고상황 등을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즉시 통보

사고와 관련해 보험회사가 요청하는 서류 또는 증거의 제출

사고와 관련해 제3자와 합의 또는 협의를 할 경우 사전에 자동차대여사업자와 협의

차량의 수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대여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확정한 공장 또는 자동차관리법령에서 규정한 자동차종합정비업체 등에 수리 의뢰

고객이 위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거나 자동차대여사업자와 협의되지 않은 곳으로 차량을 이동, 견인, 수리 등을 행하여 차량 운행에 지장이 초래되어 재수리 등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 추가비용은 고객이 부담해야 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7조제4항).

자동차대여사업자와 고객은 사고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협조를 태만히 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귀책사유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7조제5항).

차량 수리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차량을 수리하는 경우 사전에 예상비용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수리 후에는 소요된 비용을 고객에게 청구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고객이 요청하면 수리내역 증빙자료(수리 전 정비견적서, 수리 후 정비명세서)를 제공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7조제2항).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고객과 협의하여 고객이 차량을 수리한 경우 차량 정비내역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7조제3항).

※ (Q&A) 카셰어링 이용 중 사고난 차량 수리 비용 과다 청구

Q.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 중 앞 범퍼가 긁히는 사고가 발생해서 즉시 업체 측에 신고 후에 차량을 반납했는데, 3주 뒤 업체 측에서 범퍼 전체 교체비용을 청구했습니다. 범퍼의 경미한 손상으로 보였는데, 범퍼 자체를 교환한 것은 과도한 수리가 아닌가요?

A. 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 중 사고가 난 차량에 대해 사업자가 소비자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리한 후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차량 인수 후 약 3주가 지난 뒤 수리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수리비를 청구한 것은 수리 처리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출처: 『카셰어링 이용 중 사고 난 차량 수리 시 사전 협의해야』, (한국소비자원 2016. 3. 23. 보도자료) 1면 참조>

교통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보험처리

고객은 사고발생 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체결한 자동차보험 및 자기차량손해보험 또는 차량손해면책제도의 보장범위에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8조제1항 본문).

다만, 고객 또는 임대차계약서상 운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시킨 손해와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정한 면책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면책받지 못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8조제1항 단서).

고의로 인한 손해

무면허운전 사고로 인한 손해

영리를 목적으로 렌터카를 전대하거나 요금 또는 대가를 받고 차량을 사용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범죄를 목적으로 차량을 사용하다가 발생한 손해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손해

마약, 각성제, 신나 등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차량을 경기용이나 연습용 또는 시합용으로 사용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임대차계약서상 운전자 이외의 자(고객이 임차 후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주취,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하여 「소득세법」 제173조제1항에 따른 대리운전 용역제공자에게 운전을 대리하게 한 경우 그 대리운전 용역제공자는 제외)가 차량을 운전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고객의 자기부담금 등

고객은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의 경우 보험사(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자(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한 경우)에 대여자동차의 손해에 대한 자기부담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8조제2항 본문).

다만, 고객이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한 경우 고객이 납부하는 자기부담금(고객이 부담하는 휴차손해는 제외)은 차량에 대해 실제 발생한 수리비를 한도로 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8조제2항 단서).

고객이 자기차량손해보험 또는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된 경우 고객은 사고 당시 차량 기준 가액 등을 기준으로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8조제3항).

자기차량손해보험 또는 차량손해면책제도에 따른 보장금액이 고객의 배상책임금액보다 부족한 때에는 그 부족액은 고객이 부담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8조제4항).

※ (Q&A) 대여기간 종료 후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Q. 임차기간이 끝난 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처리를 할 수 있나요?

A. 대여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고객이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렌터카를 반환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가 생겼을 경우에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자동차보험 가입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며, 그 사고로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객은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그 손해 역시 배상해야 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8조제5항 참조).

※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 및 책임·손해배상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의 『교통·운전』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2. 영업손해 배상 등

※ 아래에서는 「자동차대여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제10064호, 2021. 10. 29. 개정·시행)을 중심으로 교통사고 조치 및 보험처리 등에 대해 살펴봅니다. 계약내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우선하며, 각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거래에 이용할 약관을 자유롭게 작성·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준약관은 권고사항(가이드라인)으로 각 자동차대여사업자의 개별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을 경우 참조할 수 있으며, 구속력이 없습니다.

휴차손해 및 불공정한 약관

"휴차손해"란?

"휴차손해"란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람(이하 "고객"이라 함)의 귀책으로 차량 수리가 필요하거나, 차량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되거나 도난된 경우 일정 기간 차량을 운행하지 못해 발생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영업 손해를 말합니다[『카셰어링 서비스,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 대폭 시정』, (공정거래위원회 2017. 7. 3. 보도자료) 5면 참조].

휴차손해의 부담

고객이 자신의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로 차량을 수리할 경우에는 그 수리기간의 영업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차량이 수리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되거나 도난된 경우에는 차량의 재구매 및 등록 등에 소요되는 기간의 영업손해를 부담해야 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9조제1항).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고객이 부담할 손해액을 정하는 경우 동종차량의 대여요금 등을 고려한객관적인 산정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9조제2항).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객관적인 산정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고객은 수리기간 또는 재구매 및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의 50%를 부담해야 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9조제3항 전단).

대여요금은 수리 기간 또는 재구매 및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에 해당하는 일일대여요금(고객이 실제 납부한 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9조제3항 후단).

※ (Q&A)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객관적인 산정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의 휴차손해 등 부담금 계산

Q. 고객이 A 승용차(대여기간 1~2일: 일일대여요금 91,000원, 대여기간이 7일 이상: 일일대여요금 73,000원)를 임차하여 운행 중에 자신의 귀책사유에 따른 사고로 렌터카를 파손하여 수리에 10일이 소요된 경우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휴차손해금은 얼마나 되나요?

A.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객관적인 산정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9조제3항에 따라 고객이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지급해야 되는 휴차에 따른 손해금은 다음과같습니다.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영업손해(휴차손해) = [73,000원(7일 이상 대여시 일일대여요금)×10일(수리기간)=730,000원]의 50%= 365,000원

※ 자동차대여사업자의 A승용차 대여료(가정)
대여기간 1~2일 : 일일대여요금 91,000원
대여기간이 7일 이상 : 일일대여요금 73,000원

※ (Q&A) 과도한 휴차손해를 고객에게 부담하게 한 불공정한 약관 사례

Q1. 제 실수로 차량이 고장나서 수리를 해야 하는데, 카셰어링 업체 약관에 따라 일률적으로 1일 단위의 요금을 적용해서 휴차 손해액을 계산하다고 합니다. 차량 수리시간은 몇 시간이면 되는데, 1일 요금을 전부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A1. 카셰어링은 분·시간 단위로 대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1일 24시간 중 수리(휴차)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대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1일 단위의 요금을 적용할 경우 휴차손해가 과도하게 산정될 우려가 있어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휴차 기간을 사업자의 영업이 중단된 기간(수리 기간 또는 차량의 재구매 및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휴차 손해 산정 시에도 실제 수리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적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Q2. 카셰어링 업체의 약관에 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2배의 휴차 손해를 부담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도 불공정한 약관 아닌가요?

A2. 휴차 손해는 차량을 운행하지 못해 발생한 사업자의 영업 손해로 사고 차량에 대한 보험 적용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되는 것임에도 이를 구분하여 달리 정하는 것은 부당한 약관 조항입니다.

따라서 보험의 적용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휴차 손해를 산정해야 합니다.

<출처: 『카셰어링 서비스,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 대폭 시정』, (공정거래위원회 2017. 7. 3. 보도자료) 5면 참조>

3. 자동차 반납하기

3.1. 자동차 반납방법

3.1.1. 반납 시기 및 장소 등

※ 아래에서는 「자동차대여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제10064호, 2021. 10. 29. 개정·시행)을 중심으로 자동차 반납 시기 및 장소 등에 대해 살펴봅니다. 계약내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우선하며, 각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거래에 이용할 약관을 자유롭게 작성·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준약관은 권고사항(가이드라인)으로 각 자동차대여사업자의 개별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을 경우 참조할 수 있으며, 구속력이 없습니다.

자동차 반납 전 상태 확인 등

자동차 상태 확인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람(이하 "고객"이라 함)은 차량을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반환할 때 통상적 사용으로 인한 마모 등을 제외하고 인수 시 확인한 상태 그대로 반환해야 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제22조제1항).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차량 반환 시 고객의 입회하에 차량의 상태를 확인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22조제2항).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차량을 반환받을 때에는 고객 입회하에 차량 내의 고객 또는 동승자의 유류품의 잔류 여부를 확인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22조제3항).

자동차 연료량 정산

자동차대여사업자와 고객은 차량을 반환·회수 시 잔여 연료량의 과·부족분에 대한 연료 대금을 서로 정산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22조제4항 본문 전단).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고객이 차량을 반환할 때의 연료량이 임대시의 연료량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부족분에 대한 연료대금을 요청할 수 있고, 고객은 반환시의 연료량이 임차시의 연료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초과분에 대한 연료대금을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22조제4항 본문 후단).

다만, 연료 정산의 편의와 정확성을 위해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연료탱크에 연료를 100% 채워 인도하는 경우 고객은 연료탱크에 연료를 100% 채워 반환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22조제4항 단서).

자동차 반납시기 및 장소

자동차 반납시기

고객은 약정한 대여기간 종료시점 또는 대여계약 중도해지시에 차량을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21조).

자동차 반납장소

고객은 약정한 반환장소에서 차량을 반환하되, 대여계약의 변경으로 반환장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후의 반환장소에서 반환해야 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23조제1항).

고객의 사정에 의해 반환장소가 변경되어 차량 회수에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고객이 그 비용을 부담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23조제2항).

3.2. 자동차 반납 시 문제 해결방법

3.2.1. 지연반납 및 미반납 시 조치

※ 아래에서는 「자동차대여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제10064호, 2021. 10. 29. 개정·시행)을 중심으로 자동차 지연반납 등에 대해 살펴봅니다. 계약내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우선하며, 각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거래에 이용할 약관을 자유롭게 작성·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준약관은 권고사항(가이드라인)으로 각 자동차대여사업자의 개별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을 경우 참조할 수 있으며, 구속력이 없습니다.

지연반납 시 조치

추가 대여요금 지급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람(이하 "고객"이라 함)은 임차기간을 초과하여 차량을 사용한 경우에는 차량 반환 시 추가로 대여요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6조제3항).

지연손해금 지급

자동차대여사업자와 고객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연 6%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25조 및 「상법」 제54조).

※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반환 지연 시간을 임의로 연장하거나 과도한 지연손해금을 고객에게 부담하게 한 불공정한 약관 사례

수정 전 약관 조항(예시)	수정 후 약관 조항(예시)
회사에 사전 통보 없이 반납 시간 연장을 하지 않고 이용을 하는 경우 회사가 임의로 반납시간을 연장하여 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사전 통보 없이 반납 시간 연장을 하지 않고 이용을 하는 경우(이하 '반납지연' 회사는 회원에게 연락을 취하여 이용시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회사의 연락에 응하지 않고 무단으로 반납지연 상태를 유지할 경우 회사는 사정에 따라 임의로 반납시간을 연장하여 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의 임의 연장 시간은 반납지연 상태를 해제할 수 있는 최소시간(본래의 예약 종료 예정시간부터 연장을 처리하는 현재 시각까지의 시간범위)으로 정합니다.

▶ (시정 전) 고객이 사전 통보없이 일방적으로 반납을 지연하는 경우 사업자가 차량 반납 시간을 임의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해당 조항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고객의 실제 지연시간과 관계없이 자의적으로 차량 반납시간을 연장 처리하여 고객에게 요금을 과도하게 청구할 우려가 있어 불공정한 약관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시정 후) 반납 지연 시 연장되는 시간은 반납 지연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최소 시간으로 제한하여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시간을 연장 처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출처: 『카셰어링 서비스,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 대폭 시정』(공정거래위원회 2017. 7. 3. 보도자료) 10면 참조>

미반납 시 조치

차량 회수 및 손해보전을 위한 법적 조치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고객이 대여기간 종료 시부터 24시간이 지나도 반환장소에 대여 차량을 반환하지 않거나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반환 청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차량 회수 및 손해보전에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24조제1항).

차량 소재 확인 등의 조치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위의 경우에 차량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고객에게 전화를 하거나 주소지를 방문하여 함께 거주하는 가족 및 친족 등에게 청취조사를 할 수 있으며, 차량위치정보시스템의 작동(차량위치정보 확인이 가능한 차량을 대여할 경우 그 사실을 시 고객에게 고지하고 확인받아야 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24조제2항).

손해배상 책임 및 비용 부담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위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여기간 종료 시부터 7일이 지났음에도 차량과 고객의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도난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위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차량과 고객의 소재가 불명함을 입증해야 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24조제3항).

※ 그 밖에 자동차 반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https://www.kca.go.kr)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